

더누림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급여계약	(1) 시설과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계약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항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하였으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1) 시설은 수급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수급자는 이데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게 지급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 1주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 이용료를 2달 이상 연체했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거나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계약자,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 또는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7)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받는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하여 또한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어르신 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자료와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9)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10)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사망, 입 퇴소, 외출, 외박 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12)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나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가를 적용한다.
- 재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이용시간	2025년 추가	2025년 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 9%	감경 6%
60분	24,580원	3,687	2,212	1,474
90분	33,120원	4,968	2,980	1,987
120분	42,160원	6,324	3,794	2,529
150분	49,160원	7,374	4,424	2,949
180분	55,350원	8,303	4,981	3,321
210분	61,670원	9,251	5,550	3,700
240분	68,030원	10,205	6,122	4,081

□ 방문목욕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목욕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분 류	금액(원)	2025년 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 9%	감경 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12,972	7,783	5,18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해 가정 내 목욕한 경우	77,970원	11,696	7,017	4,67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목욕)	48,690원	7,304	4,382	2,921

□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가를 적용한다.
- 재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추가한도	2,537,040	2,291,740	1,782,840	1,644,720	1,412,400	해당사항없음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0%					

주·야간보호서비스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용하면 1-2등급 추가한도 10% 발생함
주·야간보호서비스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용하면 3-5등급 추가한도 20% 발생함

더누림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요양급여 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추가한도	2,537,040	2,291,740	1,782,840	1,644,720	1,412,400	해당사항없음
1일 8시간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본인부담금(15%)	10,166	9,417	8,694	8,457	8,217	8,217
월-금 이용 (20일기준)	203,310	188,340	173,880	169,140	164,340	164,340
점심+간식비 (4,600원)	295,310	280,340	265,880	261,140	256,340	256,340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367,310	352,340	337,880	333,140	328,340	328,340
월-토 이용 (25일기준)	254,138	235,425	217,350	211,425	205,425	205,425
점심+간식비(4,600원)	369,138	350,425	332,350	326,425	320,425	320,425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459,138	440,425	422,350	416,425	410,425	410,425
본인부담금(9%)	6,099	5,650	5,216	5,074	4,930	4,930
월-금 이용 (20일기준)	121,986	113,004	104,328	101,484	98,604	98,604
점심+간식비 (4,600원)	213,986	205,004	196,328	193,484	190,604	190,604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285,986	277,004	268,328	265,484	262,604	262,604
월-토 이용 (25일기준)	152,483	141,255	130,410	126,855	123,255	123,255
점심+간식비(4,600원)	267,483	256,255	245,410	241,855	238,255	238,255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357,483	346,255	335,410	331,855	328,255	328,255
본인부담금(6%)	4,066	3,767	3,478	3,383	3,287	3,287
월-금 이용 (20일기준)	81,324	75,336	69,552	67,656	65,736	65,736
점심+간식비 (4,600원)	173,324	167,336	161,552	159,656	157,736	157,736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245,324	239,336	233,552	231,656	229,736	229,736
월-토 이용 (25일기준)	101,655	94,170	86,940	84,570	82,170	82,170
점심+간식비(4,600원)	216,655	209,170	201,940	199,570	197,170	197,170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306,655	299,170	291,940	289,570	287,170	287,170
본인부담금(0%)	-	-	-	-	-	-
20일 기준 점심+간식비 (4,600원)	92,000	92,000	92,000	92,000	92,000	92,000
20일 기준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164,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25일 기준 점심+간식비(4,600원)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25일 기준 점심저녁+간식비 (8,200원)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 시 비급여로 한다.
- 개인소모품, 식재료비, 병원비, 이미용비 (자원봉사 이미용 제외) 등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식사비는 1식당 3,600원, 간식비는 2회 1,000원으로 한다.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식사재료비	3,600원	(1식) 기준으로 계산
간식비	1,000원	(1일 2회) 기준으로 계산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한다.
- ②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비급여가 가능하나,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이 불가함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② 세부기준
 -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가능 또는 수급자가 할 경우 수급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함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은 불가함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함.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실비부담이 가능함